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2월 12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소위(2025.02.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수정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정부)

수상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상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사업자의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신고기간 정비

현행법에서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관계없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완화하여 15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현행법에서 수상레저사업자는 휴업하는 기간과 상관없이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행정청에 그 내용을 신고(휴업의 경우 휴업 3일 전까지, 재개업의 경우 재개업 7일 전까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는 단기간의 휴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잠시 휴업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어왔음.

이에 개정안은 15일 미만의 단기 휴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는 영업자가 영업 상황에 따라 잠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번 이를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15일 미만의 단기 휴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수중레저사업자 등 유사업종 영업자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사업자의 휴업신고 면제기간도 30일 미만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수중레저사업자 등 유사업종 영업자 규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사업자의 휴업신고 면제기간을 “15일 미만”에서 “30일 미만”으로 변경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휴업자에 대하여 재개업 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개업 신고대상을 명확히 하며, 탄력적 영업활동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칙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수상레저사업자의 휴업신고 면제기간을 “15일 미만”에서 “30일 미만”으로 수정함(안 제41조제1항).
- 나. 휴업 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30일 이상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자를 재개업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1조제2항).
- 다.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공포한 날”로 조정함(안 부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제1항 중 “15일”을 “30일”로 하고, 안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을 “수상레저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한 후”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공포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u>휴업</u> 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 ----- ----- <u>15일</u> 이 <u>상 휴업</u> ----- ----- ----- ----- ----- ----- ----- -----.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 ----- ----- <u>30일</u> ----- ----- ----- ----- ----- ----- ----- -----.
② <u>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u>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	② <u>제1항에 따라 휴업을 신고한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u> ----- ----- ----- ----- ----- ----- ----- ----- -----.	② <u>수상레저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한 후</u> ----- ----- ----- ----- ----- ----- ----- ----- -----.

토하여 이 법에 적 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③ (생략)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u>이 법은 공포 후 3</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 ----- -----.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 <u>공</u> <u>포한 날</u> ----- -----.
---	--	---

법률 제 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휴업”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휴업한”을 “30일 이상 휴업한 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 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u>휴업</u> 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휴업 등의 신고) ① ----- ----- ----- <u>30일 이상 휴업</u> ----- ----- ----- ----- -----.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u>휴업한</u>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 <u>30일 이상</u> <u>휴업한 후</u>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